

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 03. 01

개정 2024. 10. 2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.

제2조(구성)

- ① 치과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이 치의학과장과 치의예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하고,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임명직위원은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,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한다.
- ③ 학생대표로서 치과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위원과 학생회장은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다음을 심의한다.

- ① 학생 장학금지원 규정의 제정, 개폐에 대한 사항
- ② 장학생 선발, 추천, 장학기금 배정에 대한 사항
- ③ 학생 상담지도에 대한 사항
- ④ 학생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
- ⑤ 학생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
- ⑥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
- ⑦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

제5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으로서 학생부학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0. 3. 1)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4. 10. 23)로부터 시행한다.